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고 위 공 무 원 단 인 사 규 정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총리 (인사혁신처 소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정책결정의 중추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이 범정부적 시각에서 국정현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처 간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고위공무원단 진입 시 개방형·공모 직위 및 인사교류대상 직위 근무 등 타 부처 근무경력을 우대하고, 그 밖에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와 관련한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임용권자의 안정적인 인사권 행사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타 기관 근무경력의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재직요건 산입(안 제7조)

부처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공직자의 범정부적 정책시각을 강화하기 위하여 4급 공무원 등이 타 부처 개방형 공모 직위 및 인사교류대상 직위 근무 시, 해당 기간만큼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재직요건 단축함

나.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임기 규정 정비(안 제15조의2)

1) 임용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, 후임자 위촉까지 위원으로서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함

2)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명확히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

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고위공무원이”를 “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이”로, “제1항제3호”를 “제1항제2호 및 제3호”로, “인사교류기간등의 2분의 1”을 “인사교류기간등”으로 한다.

제15조의2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5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보궐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등)

① 제1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촉되는 보궐위원부터 적용한다.

② 제1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
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조(고위공무원단후보자) ① (생략) ② <u>고위공무원이</u> 아닌 연구관·지도관이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이후 근무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(이하 “인사교류기간등”이라 한다)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<u>제1항제3호</u>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정에 따라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에서 그 <u>인사교류기간등의 2분의 1</u>에 해당하는 기간을 감한 기간을 해당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본다. 1. ~ 3. (생략) 제15조의2(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) ① (생략) ② 제1항제2호에 규정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<u><단서 신설></u>	제7조(고위공무원단후보자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1항제2호 및 제3호</u>----- ----- ----- <u>인사교류기간등</u>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제15조의2(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<u>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u>

<u><신 설></u> <u>③</u> ~ <u>⑥</u> (생략)	<u>③</u>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. <u>④</u> ~ <u>⑦</u> (현행 제3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)
-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인사혁신처 심사임용과	
연 락 처	(044) 201 - 8327